

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 채용 공고

[건축기사, 구조화금융 전문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전문인력(건축기사, 구조화금융 전문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단위 및 인원

채용 단위	채용인원	담당업무*
건축기사	1명	- 신용보증기금 시설물 기획 및 유지 관리 업무 총괄 - 각 본부점 시설 관련 요청사항 검토 및 지원 -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 등
구조화금융 전문가	1명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보증 상품 기획, 관리 및 발행 -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프로세스 개발 및 관리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금융시장 및 법령 분석 등

* 세부 담당 직무는 (붙임5)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채용 단위	근무조건
건축기사	■ 신 분 : 별정직(5급 대우) ☞ 정규직 -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 근무 별도) ■ 보 수 : 초봉 세전 약 54백만원 수준 (군경력 제외 기준) -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경력 인정기간은 근무기간, 근무기관 등 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비율 차등적용 ■ 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에 따름 ■ 근무지* : 대구 본점 *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구조화금융 전문가	■ 신 분 : 일반직 4급(경력) ☞ 정규직 -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 근무 별도) ■ 보 수 : 초봉 세전 약 77백만원 수준 (군경력 제외 기준) -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경력 인정기간은 근무기간, 근무기관 등 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비율 차등적용 ■ 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에 따름 ■ 근무지* : 서울 유동화보증센터 *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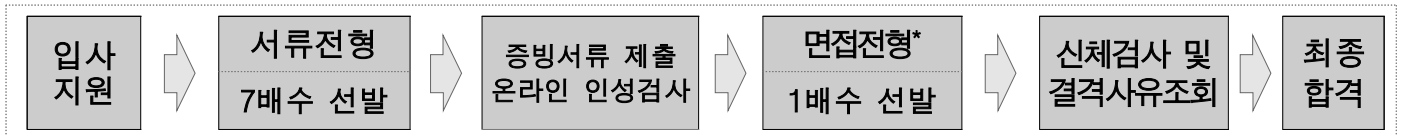
3. 지원자격

채용 단위	자격 요건
공통 (지원자 전체)	■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참조)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한 자 지원 불가 ■ 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건축기사	■ 공고일(2026.5.7.) 기준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구조화금융 전문가	■ 공고일(2026.5.7.) 기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구조화금융 업무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경력산정 유의사항	■ 경력은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통상근로(전일근무,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파견근로와 인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 기간과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관명, 근무 기간, 담당업무*, 전일제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기사 :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 구조화금융 전문가 :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 지원자격을 통해 명시한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관명, 기관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별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5. 7.(목) ~ 5. 21.(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odit2.saramin.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방법



* 증빙서류 제출 및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고 증빙서류 확인결과 3.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1]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① [1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적부심사

■ [적부심사 기준]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불성실 작성(30% 미만 작성),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 기업 지원,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기타 정확도 및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50점]

- 지원동기, 인성·가치관 및 윤리의식, 조직 적응력 종합평가

■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50점]

- 전문성, 수행방법 및 비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종합평가

- 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로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정성평가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7배수)

- 채용단위별로 1차(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합격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합격 (2차 정성평가 생략)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4.(목)

② 면접전형

< 면접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 (필수사항 등록)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실시 전 ① 응시정보 (증명사진, 생년월일)와 ② 증빙서류 (지원자격, 가점 등) 제출, ③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세부사항은 '7. 증빙서류 제출' 참조
 - **(제출기한) 제출기한까지 위 필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필수사항 제출 기한: **2026.6.10.(수) 오전 11시 (예정)**
 - **(증빙서류 부적격) 증빙서류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통보 (최종 불합격 처리)**
- 증빙서류는 면접응시 의사 사전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회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온라인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면접전형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사항을 등록하고 증빙서류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 **면접전형 평가방법**
 - 심층면접 점수(80점)와 경력평가 점수(20점)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평가

< 면접전형 평가 방법 >

채용 단위	평가 내용			
심층면접 [80점]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도, 문제해결능력, 윤리의식			
경력평가 [20점]	■ 채용단위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공고일(2026.5.7.) 기준으로 평가			
	< 경력 평가 기준 >			
	경력기간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
	점 수	10점	15점	20점

- **면접일정** : **2026. 6. 15.(월) ~ 6. 19.(금) 중 1일**

○ 면접장소 :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 건축기사 : 대구 본점, 구조화금융 전문가 : 서울

○ 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로 면접점수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월 중

③ 각종 조회 및 서류 제출

○ 신체검사 : 신보가 지정한 공무원신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 7. 증빙서류 제출 참조

④ 최종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 대상 : 제출서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월 중 예정

○ 채용예정일 : 2026. 7. 24.(금)

⑤ 결원충원

○ (충원방법) 채용단위별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충원기한 내 입사포기, 합격취소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충원

○ (충원기한) 2026. 8. 24.(월) 18시

○ 채용단위별로 지원자 미달, 과락 점수를 초과하는 득점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까지 모두 입사를 포기하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과락자, 예비합격자, 동점자 관련 기준

○ 과락자 선정 기준

－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前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 채용단위별 면접전형 과락자가 아닌 불합격자 중 2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하고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단계	기준
서류전형 동점 시	* 보훈(가점비율 무관) → 장애인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면접전형 동점 시	*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가점 적용 전 점수) →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가점 적용 전 점수)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 위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도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 합격 처리

6. 가점사항

- ▶ 가점은 공고일(2026.5.7.) 기준으로 가점항목에 해당하고 ‘7. 증빙서류 제출’ 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 (불합격은 아님)
- ▶ 가점은 전형 단계별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가점을 포함한 총점이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까지 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 제외

– 단, 채용단위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가점 적용*

* 지원자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장애인)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자격가점) 구조화금융 전문가 지원자 중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CFA(level3) 해당자에게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공인회계사, CFA(level3)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하나만 적용

7. 증빙서류 제출

-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필수사항 등록 시(온라인 인성검사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6.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 증빙 서류는 '26. 5. 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가점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제출 방법, 세부 내용,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 주민등록초본 (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건축기사	■ 건축기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 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담당기간, 전일제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관련 분야 직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위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6)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구 분	서 류 명
구조화 금 용 전문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 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담당기간 전일제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관련 분야 직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위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6)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한국공인회계사(KICPA), CFA(level 3) 증빙서류 (가점 자격증 기재자)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CFA(level3) : 시험합격통지서 (사본, 이메일 출력) 제출 가능
기 타 해당자	■ (가점 외 자격)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에 가점 외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 후 사본 제출한 서류 원본, 경력조회 자료(경력확인, 상벌내역 확인 등 관련 필요서류) 등 별도 필요서류 안내 예정

8. 수습기간 운용

- **운용기간** : 채용일(인사발령일)로부터 6개월
- **수습직원 평가** : 총 2회 이내
 - (평가항목)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합격기준) 1·2차 모두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50점 이상이며, 1·2차 평가점수(산술평균) 합계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
 - (유의사항) 수습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채용 불가
 - 징계처분 또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경우(처분 관련 사유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수습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소속 본부점장으로부터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아 인재경영부에 통보된 경우
 - 수습기간 중 통산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한 경우
 - 채용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거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정식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채용결정** : 수습직원 평가와 특별인사내신 결과를 반영하여 정식채용 결정(수습해제)
- **기타사항** : 수습기간 동안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조건은 동일

9. 기타사항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붙임2) 블라인드 위반 세부기준 참조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채용절차별 일정 변경 불가**
- 매 전형단계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 값으로 점수 처리
- 매 채용절차 참가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불가) 중 1개
- 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면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붙임1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 허위, 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인원 미달 또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사유조치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면접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6. 8.24. 18시) 내 결원 사유 발생 시 채용단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 * 최종 동점자로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한 인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등은 미충원
-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채용 확정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면접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입사지원서에 장애 유형을 기재하고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중 면접전형 직전 영업일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편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 예정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전담인력 배치, 장애유형 면접위원 사전고지
 - (청각장애) 인공와우 등 청력 관련 의료보조기구 착용 허용 (사전 확인필요)
 장애유형 면접위원 사전고지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에 편견요소인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의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블라인드 기준을 위반하여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블라인드 기준’을 숙지하시어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기준

구 분	블라인드 위배 기준 및 예시
성 명	■ 기 준 :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 예 시 : 홍길동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 이	■ 기 준 :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예 시 : 출생년도 언급 (90년생,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출생) 나이를 언급 (22살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면서)
출 신 지	■ 기 준 :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지역명(시,군,구)을 기재하는 경우 ■ 예 시 : 대한민국 수도에서 태어나~, 관악구에서 태어나
가족 관계	■ 기 준 : 가족·친인척의 회사명을 비롯한 직업 정보(과거 포함)를 기재하는 경우 ■ 예 시 : 신보에 재직 중인 형, 금융위에서 근무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직장이었던 한국주식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학 교 명	■ 기 준 : 학교명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특정 학교에 존재하는 동아리명을 기재하여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경우 ■ 예 시 : 한국대학교 총학생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환학생
단 체 명	※ 직무관련 경력확인을 위해 기업명, 기관명은 기재가능하나, 학교명 또는 지역명은 기재 금지 ■ 예 시 : 한국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근무(X) → OO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근무(O) 대구시청에서 근무(X)→ OO시청에서 근무(O)
성 별	■ 기 준 : 성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예 시 : 만형 (누나, 언니, 오빠), 장녀 (장남), 남편, 아내 미스터 (미스)김, 조강지처, 아들 또는 딸로서~ 군경험 (분대장, 전경, 운전병, 사회복무요원, 헌병, 여군, 카투사, 군제대 후 복학) ※ 의무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군경험 작성 시 블라인드 기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 채용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실제 온라인 작성서식, 구성 등은 달라질 수 있음

1. 지원 자격 [건축기사]

공고일(2026.5.7.) 기준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1. 지원 자격 [구조화금융 전문가]

공고일(2026.5.7.) 기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구조화 금융 업무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필수자격 사항 [건축기사]

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자격)번호	취득일자
건축기사			

3. 우대사항

- ※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 － 단, 채용단위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 비율(만점의 10% 또는 5%)에 따라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해당 여부 / 가점 비율 (5%, 10%) / 보훈번호			
장 애 인	해당 여부 / 장애정도 (경증, 중증) / 장애 내용			
가점 자격증 (구조화금융 전문가)	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자격)번호	취득일자
	한국공인회계사			
	CFA level.3			

4. 가점 외 자격 사항 (직무 혹은 직무 관련 지식 자격증)

※ 작성 시 주의 사항

- － 최종 합격한 자격증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 취득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증을 기재한 경우, 추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점 외 자격 사항은 면접전형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검색)	등록번호	발행기관	취득일자

5. 경력 사항

- ※ 경력 사항은 지원자격 확인, 면접전형 경력평가에 적용
- ※ 채용공고문 상에 기재된 지원자격 관련 근무 경력에 한정하며, '경력증명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기재
- ※ 경력 산정 유의사항
 - 경력은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통상근로(전일근무,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파견근로와 인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증명서 근무 기간과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관명, 근무 기간, 담당업무*, 전일제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건축기사 :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 * 구조화금융 전문가 :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 지원자격을 통해 명시한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작성 시 주의 사항
 - 근무처, 근무기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기간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 중인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을 기재한 경우 추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재직여부	근무형태1	근무형태2	주당 근로시간	퇴사사유
			재직중/퇴직	정규직/ 계약직	전일제/ 시간선택제		
담당업무							

※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계획서에 편견요소인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의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블라인드 기준을 위반하여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채용공고문 (붙임2) 블라인드 위반 세부 기준을 숙지하시어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문항

1번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직무가 기관 운영에 갖는 중요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0자 이상 500자 이내)
2번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윤리는 무엇이며, 이를 실제 업무에서 실천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0자 이상 500자 이내)
3번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거나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0자 이상 500자 이내)

■ 업무수행계획서 문항

※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본인이 보유한 지원 직무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우리 기관에서의 해당 직무 수행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② 업무 수행방법 및 비전

우리 기관에서 지원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방향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관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③ 업무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 직무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실행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업무수행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이상 2,000자 이내)

신용보증기금	
채용단위	건축기사
직무개요	신용보증기금 시설물 기획 및 유지·관리 업무 총괄 각 본부점 요청 사항 검토 및 지원
직무내용 (세부업무)	○ 시설기획팀 관련 업무 –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 – 본부점 시설유지관리(영선공사) 요청 사항 검토 및 승인
필요지식 및 기술	○ 건축 및 시설물 관리 관련 법률 지식 ○ 공사 기획 및 발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 ○ 도면 및 공사비 산출 내역 검토 능력 ○ 중급 이상의 도면(CAD) 작성 및 활용 능력
자격요건	○ 공고일(2026.5.7.)기준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청 사업관리 등)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직무수행 태도	○ 신용보증기금 업무 및 사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 노력 ○ 분석적·합리적 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노력 ○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태도 ○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자세 ○ 잦은 국내 출장 및 현장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노력 ○ 법령, 규정, 지침, 업무일정에 대한 준수 노력

신용보증기금

채용단위	구조화금융 전문가
직무개요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보증 상품 기획, 관리 및 발행
직무내용 (세부업무)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보증 상품 기획, 관리 및 발행 ○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프로세스 개발 및 관리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분석 등 ○ 자산유동화법 및 자본시장법 등 직무 관련 법령 분석
필요지식 및 기술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발행 관련 지식과 발행 실무에 대한 지식 ○ 유동화보증 발행 관련 지식과 발행 실무에 대한 지식 ○ 자산유동화 구조설계 능력 ○ 신용위험 평가, 기업가치평가 등 기업신용분석 관련 지식 ○ 자산유동화법 및 자본시장법 등 직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발행 및 유동화보증 관련 계약서(약정서) 검토
자격요건	○ 공고일(2026.5.7.)기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에서 유동화증권(ABS) 발행 관련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직무수행 태 도	○ 신용보증기금 업무 및 사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 노력 ○ 적극적인 정보수집 및 관련 분야의 동향 파악 노력 ○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 타부서와의 협업 자세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 ○ 책임감, 고객 지향적 태도 ○ 법령, 규정, 지침, 업무일정에 대한 준수 노력

경력(재직)증명서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내용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
		담당업무별 작성		담당업무 상세 명시	2026.1.1. ~ 2026.12.31.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확인자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2026년 2월 1일

_____ (직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 근무형태는 전일제가 아닌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예시: 시간선택제(주20시간))
-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 내 대표 업무를 기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이메일(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포함)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자 정보는 누락 없이 반드시 모두 기재(누락 정보가 있을 경우 반환불가) - 반환요청 서류 명칭 기재 - 자필 서명 후 스캔(PDF 또는 JPG)하여 제출 - 반환청구서(자필서명)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